

창원지방법원 2021. 4. 21 선고 2020가단1031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21. 3. 31

판결 선고 2021. 4. 21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%지분에 관한 2019. 5. 29.자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3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2020. 7. 7.자 청구취지및원인정정서와 소장을 선행한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D은 2018. 12. 26. 원고와 신용대출약정을 하여 10,000,000원을 대출기간 27개월, 거치기간 3개월, 약정이율 연15.5%, 연체이율 연18.5%로 정하여 대출실행받았으나, 2019. 2. 이전부터 월이자 등을 연체하여 2019. 2. 14. 기준으로 연체금이

원금 8,186,166원, 이자 329,339원, 지연배상금 372,335원 등 18,887,840원에 이른다.

나. 한편 D은 그 유일한 재산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(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고 한다)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체한 상태인 2019. 5. 29. 그 중 99%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지분이전등록을 해 주고 2020. 2. 24.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수령한 매매대금 931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.

[증거] 갑1내지 8호증, 을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원고가 D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D의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,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금인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와 D의 인적관계, 대가없는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하고, 피고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상당액인 9,31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예지 희

별지